

우리마을 찾아가는 치안행정 서비스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세부사업계획 [지침]

《사업개요》

- (사업명) 우리마을 찾아가는 치안행정 서비스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 제목에서 착안해 '우리 동네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의미로 네이밍(naming)함
- (추진방법) 시군 공모 진행
- (사업기간) '23. 6. ~ 11월 <6개월>
- (공모규모) 200,000천원(도비 40%, 시군비 60%)
- (선정규모) 5개 군(군별 40,000천원)
- (참여주체) 시군별 2인 선발, 2인 1조(6h/1일 근무) 구성
- (추진체계) '우리동네파수꾼 ↔ 경찰(범죄예방진단팀) ↔ 행정/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
⇒ 마을의 생활치안 불안요소 예방적 업무프로세스 정립



우리마을 찾아가는 치안행정 서비스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세부사업계획(지침)

▶ 이 세부사업계획(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과 장 강기중	055-211-0950
		사무관 안효정	055-211-0952
		주무관 김동언	055-211-0955

I. 사업개요

1. 목 적

- 주민이 우리동네파수꾼으로 직접 참여해 민-관-경 지역 관계망의 매개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활치안 확보 및 기타 불편사항 발굴·해결

2. 근거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 ▶ 자치경찰사무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 ▶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3. 주요내용

- (사업기간) '23. 6. ~ 11월 <6개월>
- (사업비) 200,000천원 (도비 40%, 시군비 60%)
- (사업주체) 5개 군 (군별 40,000천원*) ※ 공모사업으로 진행
- *인건비(2인) 20,338천원 제수당(2인) 3,092천원 교통비 2,400천원 근무복 320천원 주유비 1,920천원 등
- (구성·운영) 시군별 2인 1조(1일 6시간 근무*) 구성, CPO**와 연계해 마을 순찰 실시
 - * 활동시간대는 계절적 요인 등 지역(마을 단위) 상황을 고려 탄력적 운영
 - ** 범죄예방진단경찰관 (CPO; crime prevention officer)

II. '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공모선정 군)

2. 자격요건

- 사업자 자격
 - 우리동네과수꾼 공모신청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시·군
- 사업자 선정제외 및 취소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교부대상 제외 및 교부결정 취소

□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조례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시·군 선발 우리동네파수꾼
- 지원내용 : 생활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동네파수꾼 운영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리동네파수꾼에 대한 인건비, 활동경비 등* 보조지원
- * 안전용품, 홍보물 구입 등 소정의 운영경비로도 일부 사용가능(적합 예산과목 편성 조치)

5. 지원형태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집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조건 : 도비 40%, 시군비 60%

6. 지원항목 및 근로조건

- 지원항목 : 인건비(기본급*4대보험료), 제수당, 교통비, 피복비 및 주유비 등
 - 인건비 : 10,169천원 × 2명 [1일당 57,720원(=9,620원*×6시간)]
 - * 고용노동부 '2023년 적용 최저 임금고시'에 따르며, 기본급 외 4대보험료는 별도 산정
 - 제수당 : 1,546천원 × 2명 = 3,092천원
 - 교통비 : 1,200천원 × 2명 = 2,400천원(자기차량 교통비 보전)
 - 피복비 : 160천원 × 2명 = 320천원
 - 주유비 : 960천원 × 2명 = 1,920천원(주유비 등)
 - 기타 제경비(홍보물품 등)는 각 시군별 상황에 맞는 집행계획 수립 후 집행 가능
- 지원방식 : 예산의 범위 내 결정된 금액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인건비 등 지급일'에 근로자 예금계좌에 입금
- 근로조건
 - 주 5일, 1일 6시간, 6개월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활동시간대 등은 계절·지역요인 등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단, 일 근무시간은 최소 6시간을 충족해야 함)
 - 연장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때에는 근무시간을 사후에 가감 조정하거나 평일을 휴일로 지정 후 토·일 근무로 조정 가능*
 - * 연장 또는 휴일근무의 경우에도 평일 주간근무 기준 임금 적용(사전동의서 징구)

【참고】 예산과목 및 산출내역

예산과목	구분	산출내역	산출 단가(원)	수량	합계(원)	비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1-04)	총계					14,995,480	5,000천원 정도 여유금액	
	인건비	총계					10,169,160	
		기본급			1,385,280	6개월	8,311,680	23년 최저임금 9,620원, 6h/1일 주휴수당포함
		기관부담금 보험료			154,790		928,740	
		고용보험(1.65%)			24,242	6개월	145,452	23년 기준
		산재보험(1.03%)			13,853	6개월	83,118	23년 기준
		건강보험(3.43%)			48,416	6개월	290,496	23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11.52%)			5,941	6개월	35,646	23년 기준
		국민연금(4.5%)			62,338	6개월	374,028	23년 기준
		소계			262,960		1,546,320	
	제수당	연차수당			57,720	6개월	346,320	한달 만근 시 1日 발생
		명절수당			200,000	1회	200,000	추석명절
		급량비			8,000	125일	1,000,000	
	교통비	교통수당			200,000	6개월	1,200,000	자기차량 교통비 보전
사무 관리비 (201-01)	총계			80,000	6개월	160,000		
	피복비	긴팔			40,000	2벌	80,000	상의 기준
		반팔			40,000	2벌	80,000	"
공공 운영비 (201-02)	주유비	16,000원(10L 당)*20km	320,000	6개월	1,920,000	통행료 포함		

7. 우리동네파수꾼 자격 및 업무

< 자 격 >

- 신청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주소지(또는 거소지)를 두고 있는
만 35세 이상 70세 미만 근로능력자로서 우리동네파수꾼 활동에
대하여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자
- 근무지 출·퇴근 및 6개월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주 활동지가 관내 다수지역인 점을 고려해 차량 보유 및 운전 가능한 자
- 상기 조건 외 시·군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음

< 활동 및 임무 >

- 활동구역 : 관내 우범·취약지역 일대(원룸밀집지역, 안심귀갓길, 자살발생 위험구역, 노숙인·외국인 밀집지역 등)
- 활동직함 : 우리동네파수꾼
- 활동임무 : 범죄예방 순찰, 취약요인 신고 및 재난·재해사고 예방

【참고】 우리동네파수꾼 활동 예시

연번	분야	활동예시	비고
1	사회적 약자 보호	남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남직원에게 3개월간 100여 회의 음란 메시지를 받았다는 피해 사실 청취, 경찰관서에 전달하여 피의자 검거 기여	
2		올해 초 개소한 ○○중학교 기숙사 주변 청소년 비행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 청취, 경찰서에 통보하여 해당지역 순찰강화 등 안전 향상	
3	민환경 치안융합활동	지역안전 순찰근무 중 공중화장실 주변 인적이 드물어 이용자들이 불안감을 호소, 지자체 협업 112연계 비상벨·블랙박스 등 시설 개선 및 탄력순찰 등록, 언론홍보	
4		시청·공기업·대학생 봉사단체와 협업, 대학 인근 상가 및 1인가구 밀집 지역 환경개선(보안등6, LED벽화3, 쓸라표지병72, 특수형광물질 60) 및 합동 순찰 진행	
5		야간에 어두워 통행시 불안하다는 의견 청취, 간이범죄예방진단 후 CPO통보 △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상정 △ CPO 현장 범죄예방진단 실시 △ 지자체 협업 조도 개선 등 지원	
6		마을경로당 방문 중 주민들로부터 마을에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 발생 및 화재 위험이 있다는 의견 청취, CPO와 합동으로 현장 진단 및 지자체 협업으로 '18년 목표조례로 제정된 '빈집 정비조례'를 근거로 철거 조치 지원	
7		공원, 학교 주변에 청소년 비행 관련 주민 제보를 접하고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 등과 업무협약(MOU), 정례 합동순찰 및 언론 홍보	
8		주요관광지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에 대한 범죄 불안 여론을 청취, 탄력순찰 활동 강화와 블랙박스·비상벨 설치 등 선제적 범죄예방 조치 지원	
9		아파트 공원에서 노숙하며 주민들에게 시비 거는 남자가 있다는 내용 청취, 노숙인 발견하여 인적사항 등 확인 결과 중국국적 불법체류자로 확인, 출입국관리소에 신병인계	
10		위험범죄요인 사전제거	아파트 인근 공원 벤치 노숙자 문제 확인, 시립복지원 입소 조치, 지자체 협업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일자리 연계
11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원에 야간 치안환경이 불안하다는 의견 청취, 경찰서장 주재 지자체 합동 취약환경 점검, 조도개선·CCTV 설치 등 여성 불안 해소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위원회	→	시·군	→	위원회	→	시·군/관할서	→	위원회
·사업계획 (시행지침) 수립·공고 ·공모신청서 접수 및 사업자 선정		·(선정 前) 공모 신청서 제출 ·(선정 後) 보조금 신청, 근무희망자 모집공고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사업추진상황 점검·확인		·근로자 선발 ·사업추진상황 및 근로자 관리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보조금 확정 ·사업성과 환류



구분	주요역할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파수꾼 공모 총괄 기획 및 조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시군 공모추진 · 심사 및 선정
시군 총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세부방안 수립 · 우리동네파수꾼 인력채용, 운영 및 관리 · 지역 내 생활불편사항 해결 및 관리
우리동네파수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벽지, 산골지역, 원룸밀집·안심귀갓길·자살발생 위험구역·시장·노숙인·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주민접촉 목적 순찰 · 범죄예방 순찰, 마을 취약요인 신고 · 재난·재해사고 예방활동
관할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 CPO(범죄예방진단팀) 연계 마을 순찰 · 우리동네파수꾼 일일 활동일지 관리 · 우리동네파수꾼 담당 마을 및 역할체계 정립 및 관리 · CPO(범죄예방진단팀)가 의견 수렴내용을 해당 팀(관할署)에 통보 ·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 안건 상정 및 간담회 등 실시
시군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안전안전지킴이로부터 수렴된 의견에 대해 분야별(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안전)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문제진단·해결 논의 · 생활치안서비스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의 및 조정역할 수행

IV. 사업추진 절차

<일정별(요약)>

① 지침수립·공고(위원회)	2023. 2. 15.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 도내 시·군 • 신청내용 : 공모신청서(사업개요, 운영계획,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 신청방법 : 공문 제출[공고마감일 18시까지 도달(접수)분만 유효] 	
② 신청서 제출·접수(委/시·군)	2023. 2. 15. ~ 3. 15. (1개월)*변동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제출(시·군→위원회) → 신청서 접수(위원회→시·군) 	
③ 공모신청서 검토(위원회)	2023. 3월 정기회의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능력(조직·인원·운영비, 과거 실적, 사업계획 구체성·실현가능성 등) - 차별화요소(생활치안문제 특성, 해결방식 적정성, 타 시·군 대비 차별성 등) - 사업운영(치안서비스 수요, 인력동원 용이성, 주민참여도, 안전조치 마련 등) - 지역사회기여도(생활안전 확보, 사업성과 아카이빙을 통한 향후 확산가능성) - 가점요인(시·군비 부담 여부·정도, 경찰서장 참여 의지 유무·정도 등) 	
④ 사업자 선정·통보(위원회)	2023. 3. 30.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문위원회(위원회 내부 자문기관)* 심사 후 위원회 정기회의 안건 상정 *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변호사·교수·시민대표 등) •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점수 고득점 우선순위에 의하되(상대평가), 신청 시·군이 3개 이하인 경우 총점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로 선정(절대평가) 	
⑤ 사업비 교부/인력모집(委/시·군)	2023. 4. 31.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교부(신청) : 위원회/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 '인력 선발 및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첨부해 보조금 교부 신청 - 위원회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실시 • 인력 모집(선발) :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모집 원칙이되, 수요가 없으면 관계기관 추천 등 시·군 여건에 따라 추진 - 지역실정에 맞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계약 체결(붙임 근로계약서 참조) 	
⑥ 사업추진/이행점검(委/시·군)	2023. 6.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 시·군/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 인력 운영 및 복무관리(근로자 근태, 활동사항, 안전사고 예방 등) - 경찰서 : CPO와 동행해 마을 순찰, 활동일지 관리, 의견수렴 및 간담회 등 • 이행점검 : 위원회/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 현장 불시점검 등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적보고 등 자료제출 요구 - 시·군 : 현장점검 협조, 자료제출 및 조사,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등 	

<기관별>

1. 사업자(시·군) 선정

위원회

- 사업계획(시행지침) 수립 및 공고 : 2023. 2. 15.한
- 공모신청서[붙임1] 접수 및 사업자 선정 : 2023. 2. 15. ~ 3. 30.

□ 선정주체(방법)

- 정책자문위원회(위원회 내부 자문기관)* 심사 후 위원회 정기회의 안건 상정
*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변호사·교수·시민대표 등)
- 심사결과 평가점수 **고득점 우선순위**에 의하되, 신청 시·군이 3개 이하인 경우 **총점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로 선정(상대평가+절대평가)

□ 선정(심사)기준

항목	심사내용	정도	배점	점수
사업수행능력 (25)	○ 사업자의 조직·인원·운영비 등 사업수행 능력 ○ 과거 사업수행 실적, 자원동원 능력 등 - 자부담 비율 등 사업수행 의지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우 수	25 ~ 18	
		보 통	17 ~ 10	
		미 흡	9이하	
차별화요소 (25)	○ 지역사회 주요 생활치안 문제의 독특성 및 해결방식(수단)의 적정성 및 특화도 ○ 타 시·군 대비 운영(프로그램) 차별성 ○ 주민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여부	우 수	25 ~ 18	
		보 통	17 ~ 10	
		미 흡	9이하	
사업운영 (25)	○ 활동구역 접근성, 치안서비스 수요, 인력동원(배치) 용이성 등 사업 여건 ○ 지역주민 참여도 및 협의회 활성화 정도 ○ 활동상 안전조치 마련 등 안전관리 체계 확립	우 수	25 ~ 18	
		보 통	17 ~ 10	
		미 흡	9이하	
지역사회기여도 (25)	○ 지역사회 치안문제 해결을 통한 생활안전 확보 ○ 사업성과 아카이빙을 통한 향후 확산 가능성	우 수	25 ~ 18	
		보 통	17 ~ 10	
		미 흡	9이하	
가점요인 (5)	○ 시·군비(자부담) 부담 여부 및 정도		2.5	
	○ 관할 경찰서장 참여 의지(확인서 등)		2.5	
합 계			100점	

시·군

- 희망 시·군, 공모신청서 제출 ('23.2~3월)

2. 사업추진 준비

위원회

-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 ('23.4월)

시·군

-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동네파수꾼 선발 및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붙임2] ('23.4~5월)
 - * 사업계획에는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우리동네파수꾼 공개모집*·선발** ('23.5월)
 -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가 없으면 관계기관 추천과 일반모집 등 시·군 여건에 따라 추진[운영기간(6개월)을 고려해 모든 선발절차는 5월말까지 마무리]
 - ** 연령·유사경력·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되 (필요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가능), 중도포기자 발생 대비 예비희망자 확보
- 채용예정자에 대해 사업개시일 3일 전까지 선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포기자 최소화를 위해 통보 시 참여여부 최종 확인
- 지역실정에 맞게 근로계약서[붙임4] 작성 및 근로계약 체결

신청인

- 우리동네파수꾼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시·군별 공고에 따른 참여 신청서 등[붙임3]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시·군(담당부서)에 제출

【참고】 우리동네파수꾼 근로자의 법적 지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자로 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서 매년 사업종료 시 고용계약 종료)

3. 사업시행 관리

위원회

- 사업 추진상황 수시 점검 ('23.6월~)

시·군/관할서

< 사업관리 >

- (성과 제고) 각 시·군은 성과 제고를 위하여 근로자의 지각, 결근, 업무수행태도, 활동사항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사업부서(담당자) 지정) 각 시·군은 우리동네과수꾼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업부서*(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 관련 업무부서를 총괄부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목표 제시) 근로자는 CPO와 협의해 사업담당자에게 자율적으로 활동구역 및 활동량(순찰횟수, 신고·제안건수 등)을 제시*하고, 사업 담당자는 근로자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해야 함
 - * 활동구역별로 유동인구 및 방범시설 현황, 범죄취약계층 분포 등을 종합 고려 제시
- (자체 수시 점검) 사업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사업 추진상황 감독, 근로자 복무 점검, 생활불편사항 해결·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시정 조치) 사업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등은 현지 시정조치 등을 통해 해결함과 동시에 시정 후 개선실적 등을 점검해야 함

< 복무관리 >

- (안전 우선 고려) 활동구역 지정·운영 시 반드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함
 - ※ 우범·취약지역 순찰 시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장치 휴대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천재지변 등 현장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실내에서 우리동네과수꾼 실적정리, 홍보,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함
- (활동복장)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되, 시장·군수가 발급한 우리동네과수꾼 증표를 항상 패용토록 함[붙임9]

- (근태확인) 관할서장(생활안전계장) 또는 사업담당자는 매일 우리동네 파수꾼이 작성한 근무일지·근무기록부 등을 확인·서명해야 함 (필요시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붙임5, 6]
- (연락체계) 우리동네파수꾼과 사업담당자·CPO와의 상시 연락체계 확립
- (관리·감독 철저)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보수만 받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근무태도, 활동사항 등을 점검하고 관리·감독 철저
-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재) 아래 '불성실 근로자 판단기준' 등을 참고해 불성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계약해지 등 적의 조치

□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54조(해고 등) ①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노동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직노동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5.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6. 노동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복무사항 위반 불성실 근무자 판단기준>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후 사업담당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조퇴자 : 사전에 사업담당자 등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3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사업담당자 등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받은 활동 구역을 상습적으로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 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 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 지급), 3회 이상 적발 시 참여 배제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

- 우리동네파수꾼으로부터 청취·수렴한 의견에 대해 분야별로 구성된 소위원회(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안전)에서 문제진단·해결 논의
- 생활치안 서비스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의 및 조정역할 수행

4. 이행점검

위원회

- 현장점검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 모니터링*하고 활동실적, 우수사례 등 사업성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 시 반영
- * 모니터링 항목 :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상황, 문제해결 노력·실적 등
- 사업추진 실적보고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요구 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법」, 「경상남도보조금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보조사업 수행 배제, 재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조치
- 시·군 제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도비 회수 조치
- 정기 모니터링 결과, 우수사례,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하여 연말 도지사 표창(공무원, 민간인)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시·군

- 위원회가 실적 보고 제출 요구 시 사업추진 실적 보고[붙임기]
-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로 그간 누계 실적 및 정산보고서로 결과 보고[붙임8]
- 다음 연도 도가 확정된 집행잔액(이자 포함)에 대하여 예산 확보 후 조속히 반납
- 우리동네과수꾼 운영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인지도, 이해도, 성실성, 필요성 등) 실시 후 수범사례와 함께 조사결과 제출

5. 기타사항

- 본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이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공모신청서

사 업 명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공모사업명			
기관정보	법인 또는 단체명	○○시(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설립일자		
담당자 정보	담당자명		e-mail
	연락처		mobile
전담인력	총 명		
사업기간	2023년 월 일 ~ 월 일		
사업추진 재 원(천원)	계	도비	시·군비
<p>위와 같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며, 관련 법령·규정 등 경상남도(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p> <p>아울러 본 신청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수행기관명 : _____ (직인)			
경상남도지사(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 기관·단체 현황 ○ 기관·단체 증빙서류 사본 			

접수번호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사업계획서

2023. . .

[단체명]

목 차 [예시]

I. 사업개요

1. 사업추진 배경

2. 추진목표

3. 추진방법 및 절차

II. 사업 운영계획

1. 운영개요

2. 차별화 요소

3. 인력투입계획

4. 운영일정계획

5. 모집(선발)계획

III. 소요예산

IV. 기대효과

V. 유사사업 운영실적

【기관(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I 사업개요

1. 사업추진 배경

○

-

.

2. 추진목표

○

-

.

3. 추진방법 및 절차

○

-

.

작성방법

-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
- 해당 시군의 환경적·사회적 여건, 주민 및 이용자의 요구 등 다각적인 요인과 연계하여 이번 사업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 제시
- 제시된 목차로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추가 가능

II 사업 운영계획

1. 운영개요

0
-
.

2. 차별화 요소

0
-
.

3. 인력투입계획

0
-
.

4. 운영일정계획

0
-
.

5. 모집(선발)계획

0
-
.

III 소요예산

- 총사업비 : 천원
- 도 비 : 160,000천원
- 시·군비 : 240,000천원

○ 항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도 비	시·군비	
계		0	0	0	
인건비					
제수당					

작성방법

-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시·군의 경우 그 부담내역을 기재하되, 실제 부담 및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나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등 편성 불가
 - 시행지침 상의 '예산과목 및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
 - * 지킴이 인건비, 제수당, 교통비, 피복비 및 주유비 등
 - 편성 불가 항목
 - 1) 사업담당자 인건비,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운영경비
 - 2) 시설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3)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IV 기대효과

0

-

.

V 유사사업 운영실적

0

-

.

작성방법

- 이번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없으면 생략 가능

보조금 교부 신청서**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 성 명 :

2. 사 업 명 : 우리동네파수꾼 사업**3. 사업장소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주민이 우리동네파수꾼으로 직접 참여하여 민-관-경 지역 관계망의 매개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활치안 확보 및 기타 불편사항 발굴·해결

나. 내 용 : 우리동네파수꾼 00명에 대한 인건비 및 활동경비 등 지원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 : 금 원(금 원)

- 도 비 : 금 16,000,000원(금 일천육백만 원)
- 시군비 : 금 원(금 원)

6.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16,000,000원(금 일천육백만 원)

- 도 비 : 금 16,000,000원(금 일천육백만 원)

7. 사업시행 예정기간

- 시행예정일 : 2023년 월 일
- 완료예정일 : 2023년 월 일

우리동네파수꾼 사업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지방 보조금의 교부 신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경상남도지사(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귀하

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우리동네과수꾼 사업
- 기간 : 2023.
- 장 소 :
- 사업량 : 00명
- 사업비 : 00천원(도비 16,000, 시군비 00)
- 보조사업자 : 00시·군
- 사업내용 : 우리동네과수꾼 인건비 및 활동경비 등 지원

2.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3. 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별	금 액	산출내역
인 건 비		시급9,620원 × 6시간 × 00일 × 0월 × 00명
제 수 당		00000원 × 0명
계		

4. 인력배치 계획

활동구역	투입인원	일근무시간	근무기간	비 고
		6시간	0월 ~ 0월(0개월)	
계	00명			

붙임3**우리동네파수꾼 참여신청서(예시)**

* 서식 변경 가능

1)
(앞면)**우리동네파수꾼 참여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3.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유선전화번호	
e-mail			무선전화번호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 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이전 직업		분야/경력	분야, 년
	근무기간	년(. . . ~ . . .)	보유자격증	

근로자격사항(예시)

현재 거주지역	00시 00동	휴일근무가능여부	○, ×	근무시간 조정가능여부	○, ×
차량 보유	운전 가능	노트북 보유	문서작성 가능	카메라 보유	기타
○, ×	○, ×	○, ×	○, ×	○, ×	

- ① 본 신청서는 우리동네파수꾼 참여 근로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의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는 불이익(우리동네 파수꾼 근로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월 일**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 붙임 : 1. 경력증빙서류
2. 자격증빙서류(해당되는 자)
3. 추천서(해당되는 자) 등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우리동네파수꾼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근로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우리동네파수꾼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근로자 선정 및 근로자 참여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때는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우리동네파수꾼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근로자 선정 심사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23 년 월 일

귀하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장(이하 "사업주"라 함)과 기간제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현 주소			최초계약일	비고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 각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3. 근로계약기간 : ○○○○. ○. ○ ~ ○○○○. ○. ○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시업 및 종업시각 : 시 분부터 시 분까지(1일 시간)
- 휴게시간 :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5.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 근무형태(직종) :
- 근무장소 :
-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

6. 휴일 : 주 요일

7. 휴가 :

8. 임금

생활안전계장	담당자	확 인

2023. . . (요일), 날씨

1. 사업개요

- 활동구역 : (~)
- 근로인원 : 명(○○○, △△△)

2. 근무내용

- 금일목표 :
-
- 금일활동
-
-

사진	사진
----	----

3. 특이사항

-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음

2023. . .

우리동네파수꾼 : (서명/인)

우리동네과수꾼 지원사업 실적 보고(2023. . . 기준)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천원)

시군별	계 획				집행실적(누계)			
	명	사 업 비			명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합계								
○시군								

2. 사업추진 실적

○ 활동실적

시군	활동내역(회/명)					근무기간(日)		비고 (성별, 나이)
	계	지도(회)	점검(회)	교육(명)	홍보(명)	평일	주말	
합계								
지킴이1								
지킴이2								
지킴이3								
지킴이4								
지킴이5								

○ 주요사례 :

3.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

4. 우수사례

○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보조금 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군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도비	시군비	기타	비고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집행율(%)					

상기와 같이 도비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보조사업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사업 실적 보고서

I. 사업개요

- 사업명 :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 기간 :
- 장소 :
- 사업량 :
- 사업비 :
- 보조사업자 :
- 사업내용 :

2. 사업추진 실적

- 활동실적

시군	활동내역(회/명)					근무기간(日)		비고 (성별, 나이)
	계	지도(회)	점검(회)	교육(명)	홍보(명)	평일	주말	
합계							-	
파수꾼1							-	
파수꾼2							-	

- 주요사례(월별)

시기	추진 실적	활동 사진	비고
월			
월			

3. 자체 평가결과(종합)

-

(앞쪽)

제 호

우리동네 파수꾼

사 진

3cm × 4cm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홍길동(한자)

HONG, G. D.

시 · 군

55mm × 85mm [인쇄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우리동네파수꾼증

번호:

성명:

생년월일:

활동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우리동네파수꾼으로 지정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 군 직인

1. 이 사람은 마을안전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조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때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